

	<h1>보도자료</h1>	2021. 12. 11. (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23 -

“가짜 의사, 가짜 약사 NO!”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공약 발표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주범
- ‘15년부터 올 6월까지 2.5조원 부당 청구… 코로나19 환자 77만명 치료비와 맞먹어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및 전담조직 설치, 불법 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 환수, 자진신고자·내부고발자 면책과 신고포상 강화 등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23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 면허대여약국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추구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칭한다.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불필요한 검사와 수액 주사 등을 남용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장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건강·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낭비 초래 등의 문제도 동반된다.

이재명 후보는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보재정 누수액은 2조 5,261억 원(829개소)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4.68%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이 금액이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돈” 이고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 이라며,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만큼,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 등 재정 누수를 차단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짜 의사,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전담조직 설치를 들었다. 경찰 및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속한 적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불법 개설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부당 청구해 받아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자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도 제시했다. 자정 기회를 줌으로써 더욱 이른 시일 내에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환자를 보호하고, 건강보험 도둑질을 막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주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월 화재로 큰 인명피해(159명 사상)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끝)

※정책본부 전략기획실 이백휴 (010-7139-6627)

□ Q&A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 Q&A

Q1.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란?

☞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설자격이 없는 자(사무장)가 영리추구 목적으로 의료인(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주요유형>

실소유자	불 법 내 용
의료기관 개설자격 미보유자 (비의료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주도적 운영
의료기관 개설자격 보유자 (의료인)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개설
개설자격 미보유자 (비약사)	비약사가 약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운영
	비약사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운영
개설자격 보유자 (약사)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복수 개설·운영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가 다른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복수 개설·운영
개설자격 보유자 및 미보유자	약사가 타인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주어 약국을 개설·운영토록 함

Q2.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왜 문제인가?

☞ 사무장병원은 부실 의료 서비스의 정점으로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합니다. 짧은 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 의료 서비스를 남용(불필요 검사, 수액 남용 등)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장비 투자를 외면합니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은 급증하는데, 환수는 어렵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액은 2조 5,261억원(829개소)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4.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159명 사상)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을 전형적인 불법개설 기관의 사례(2018년 1월)로 들 수 있습니다.

Q3. 사무장병원 대책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는?

☞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할 긴급 사안이며, 단속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무장병원은 개설부터 운영, 성과 귀속까지 의료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사정을 잘 파악하여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의 수사 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적기에 되지 않아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수사 기간 동안 재산은닉, 사실관계 조작 등의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단은 전국적 조직망, 행정조사 경험자 등 200여 명의 조사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포착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Q4. 특사경 관련 법안의 논의 상황은?

☞ 2018-12-06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역을 통해 수사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지만, 비공무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비공무원의 수사권 행사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권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례>

부여 대상	대상 범죄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¹⁾
기장, 선장 등	기내 및 선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²⁾
금융감독원 임직원	금융시장의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³⁾
민영교도소 장 및 직원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⁴⁾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Q5.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입장은?

☞ 이는 국회 입법사항으로, 국회에서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길 희망합니다.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만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선장과 해원 등)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①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4급 이상의 직원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무원 의제 등)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